

1. 거주자 갑(금융업을 영위하지 않음)의 2026년 금융소득에 관한 자료이다. 갑의 종합소득금액에 합산될 금융소득금액으로 옳은 것은? 단, 별도의 언급이 없는 한 금융소득에 대한 원천징수는 적법하게 이루어졌으며, 모든 금액은 원천징수세액을 차감하기 전의 금액이다.

[2025 CPA 1차 21번 변형]

- (1) 비영업대금의 이익: 3,000,000원
- (2) 조세특례제한법 상 요건을 충족하는 청년미래적금에 대한 이자 소득 : 4,000,000원
- (3) 비상장내국법인이 지급한 무상주: 1,000주(이익잉여금의 차본 전입에 의한 것이며, 주당 액면가 5,000원, 주당 시가 6,000원임)
- (4) 조세특례제한법 상 요건을 충족하는 고배당기업으로부터의 배당 : 20,000,000원
- (5) 상장내국법인이 지급한 현금배당금: 1,000,000원
- (6) 소득세법시행령상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 18,000,000원\*

\* 거래소 상장주식 매매차익 3,000,000원과 배당소득 15,000,000원으로 구성되며 수수료는 차감된 금액임

- ① 21,000,000원    ② 21,400,000원    ③ 22,000,000원
- ④ 24,000,000원    ⑤ 24,400,000원

## 세법

**정답** ⑤

**해설**

### (1) 금융소득의 과세분류

구분	과세분류	비고
① 비영업대금의 이익	조건부 종합과세	
② 청년미래적금에 대한 이자소득	비과세 금융소득	2026 개정세법으로, 조특법 상 요건을 만족하는 청년 미래적금에 대한 이자소득은 비과세한다.
③ 무상주 의제배당	조건부 종합과세 (Gross-up O)	
④ 고배당기업으로부터의 배당	무조건 분리과세	2026 개정세법으로, 2천만원까지 14%의 세율로 원천징수한다.
⑤ 상장법인 현금 배당	조건부 종합과세 (Gross-up O)	
⑥ 집합투자기구 이익	조건부 종합과세 (Gross-up X)	

### ▣ 2026 개정세법 정리

- 조세특례제한법 상 요건을 충족하는 청년미래적금에 대한 이자소득 : 비과세 금융소득임.
- 조세특례제한법 상 요건을 충족하는 고배당기업으로부터의 배당 : 다음의 세율로 분리과세한다.

구분	세율
2천만원 이하	14%
2천만원 초과 3억원 이하	20%
3억원 초과 50억원 이하	25%
50억원 초과	30%

**도해**

### (1)

구분	조건부 종합과세	무조건 종합과세
이자소득	3,000,000	-
배당소득(Gross-up X)	15,000,000	-
배당소득(Gross-up O)	5,000,000 + 1,000,000	-
합계	24,000,000	-

### (2) 금융소득금액

$$= 24,000,000 + \text{Min} [6,000,000^*, 4,000,000^**] \times 10\% \\ = 24,400,000$$

\*1 Gross-up 적용대상 배당소득 6,000,000

\*2 24,000,000(금융소득 합계) - 20,000,000(원천징수세율 적용분) = 4,000,000

2. (주)A의 생산직 사원인 거주자 갑의 2026년 근로소득 관련 자료이다. 갑의 2026년 근로소득 총급여액으로 옳은 것은?

(단, (주)A는 중소기업이며, 2025년 총급여액은 36,000,000 원, 갑은 사용자 및 (주)A와 특수관계에 있지 않음)

[2023 CPA 1차 22번 변형]

- (1) 급여: 21,600,000원(월 1,800,000원×12개월)
- (2) 임여금 처분에 의한 상여금: 10,000,000원  
(임여금처분결의일: 2025.11.25., 지급일: 2026.1.25.)
- (3) 식사대: 7,200,000원(월 600,000원×12개월, 식사대 이외에 별도로 식사를 제공받고 있음)
- (4) 「발명진흥법」에 따른 직무발명보상금: 2,000,000원  
(직무와 관련된 발명으로 인해 회사로부터 지급받은 금액임)
- (5) 주택의 구입에 소요되는 자금을 회사로부터 무상으로 대여받음  
으로써 얻은 이익: 2,400,000원(월 200,000원×12개월)
- (6) 휴일근로로 지급받은 초과근로수당: 3,000,000원

- ① 29,400,000원
- ② 30,000,000원
- ③ 30,200,000원
- ④ 30,400,000원
- ⑤ 31,000,000원

## 세법

정답 ①

해설

### (1) 도해

구분	총급여액	월정액 급여	비고
급여	21,600,000	1,800,000	
상여금	-	-	잉여금 차분에 의한 상여금의 수입시 기는 잉여금차분결의일이다.
식사대	7,200,000	600,000	식사대 이외에 별도로 식사를 제공받 고 있으므로 식사대의 경우 전액 과 세한다.
직무발명 보상금	-	-	
주택자금 대출로 인한 이익	-	-	중소기업 종업원의 주택자금대출로 인한 이익의 경우 복리후생적 성질의 급여로써 비과세한다. 월정액급여 에도 포함되지 아니한다.
초과근로 수당	600,000		2026 개정세법으로 월정액급여가 260만원 이하이고, 직전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3천 7배이하인 생산직 근로자의 경우 연 240만원을 한도로 연장근로수당을 비과세한다. → 3,000,000-2,400,000 = 600,000
합계	29,400,000	2,400,000	

### ▣ 2026 개정세법 정리

- 1월 16일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으로, 2월 중 차관회의, 국무회  
의 등의 절차를 걸쳐 2026년 2월 중 공포 및 시행될 예정인  
내용임.
- 기존에는 생산직근로자의 연장근로수당의 비과세 기준이, 월정  
액급여 210만원 이하 & 직전 과세기간 총급여액 3,000만원  
이하였음.
- 개정안에 따르면 생산직근로자의 연장근로수당의 비과세 기준이  
월정액급여 260만원 이하 & 직전 과세기간 총급여액 3,700만원  
이하로 변경됨. 이를 만족하는 경우 비과세한도는 기존과 동일하  
게 연간 240만원임.

# SUMMIT 2회 23번 개정 사항 반영 문제 (20260116 기준)

3. (주)A에서 근무하는 거주자 갑의 2026년 근로소득 총 급여액을 계산한 것으로 옳은 것은? (단, 같은 직전 과세기간의 총 급여액이 3천만원인 생산직 근로자이며, 주어진 자료 이외에는 고려하지 않음) [SUMMIT 2회 23번]

- (1) 기본급: 18,000,000원(월 1,500,000원×12회)
- (2) 상여금: 3,000,000원(연 2회)
- (3) 자녀보육수당: 7,200,000원(월 300,000원×12회)×2명, 과세기간 개시일 기준 6세 이하인 자녀 2명에 대한 2026년 자급분에 해당함)
- (4) 연장시간근로수당: 2,800,000원(연장근무 시 지급)
- (5) 작업복: 200,000원(현물 지급)
- (6) 식사대: 2,400,000원(월 200,000원×12회, 식사제공은 없음)
- (7) 차량보조금: 2,400,000원(월 200,000원×12회, 종업원 소유의 차량으로 출퇴근용으로만 사용함)
- (8) 단체상해보험료: 600,000원(월 50,000원×12회, 회사가 부담한 보장성보험료임)
- (9) 국민연금부담금: 1,440,000원(회사가 부담한 국민연금부담금 연간 총액이며, 종업원부담금 월 60,000원과 회사부담금 월 60,000원의 12개월분임)
- (10) 사택을 무상제공 받음에 따라 얻은 이익: 3,600,000원(월 300,000원×12회)

- ① 25,720,000원    ② 26,120,000원    ③ 26,720,000원  
 ④ 26,920,000원    ⑤ 28,120,000원

## 세법

**정답** ④

**해설**

구분	금액	비고
기본급	18,000,000	-
상여금	3,000,000	-
자녀보육 수당	2,400,000 <sup>*1</sup>	<p>&lt;2026년 개정&gt;</p> <p>개정 전에는 자녀 수 상관없이 월 20만원까지 자녀보육수당에 대해 비과세하였으나 세법 개정으로 자녀 1인 당 20만원까지 비과세한다.</p> <p>근로자 또는 그 배우자의 해당 과세기간 개시일을 기준으로 6세 이하(6세가 되는 날과 그 이전 기간을 말함)인 자녀의 보육과 관련하여 사용자로부터 지급받는 급여로서 자녀 1인 당 월 20만 원 이하의 금액은 비과세하므로 월 20만원을 초과하는 월10만원은 과세한다.</p>
연장근무 수당 <sup>*2</sup>	400,000	<p>생산직근로자(직전 연도의 총 급여액이 3천 7백 만원 이하이고, 월정액급여가 260만원 이하임) 이므로 연장근무수당은 연간 240만원을 한도로 비과세한다.</p> <p>→ 2,800,000 - 2,400,000 = 400,000</p>
작업복	-	실비변상적인 성질의 비과세급여
식사대	-	식사제공이 없었으므로 식대 월20만원까지는 비과세한다.
차량 보조금	2,400,000	차량을 업무수행이 아닌 출·퇴근 편의를 위하여 지급하는 교통보조금은 과세대상이다.
단체상해 보험료	-	단체 순수보장성보험과 단체환급부 보장성보험의 보험료 중 연70만원 이하의 금액은 비과세한다.
국민연금 부담금	720,000	종업원 부담분은 비과세하지만, 사용인 부담분을 회사가 대납한 경우에는 종업원이 급여를 받아서 납부한 것으로 본다. 따라서 해당 대납액을 근로소득에 포함하고, 연금보험료공제를 한다.
사택제공 이익	-	직원이 받은 사택제공이익은 복리후생적 성질의 급여이므로 비과세한다.
총 급여액	26,920,000	

\*1 (300,000 - 200,000) × 12개월 × 2 = 2,400,000

\*2 연장근무수당 : 2,800,000 - 2,400,000 = 400,000

비과세판단	월정급여액이 2,560,000으로, 260만원 이하이므로 연 240만원 한도로 비과세한다. → 2,800,000 - 2,400,000 = 400,000
-------	---

### ▣ 2026 개정세법 정리

- 1월 16일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으로, 2월 중 차관회의, 국무회의 등의 절차를 걸쳐 2026년 2월 중 공포 및 시행될 예정인 내용임.
- 기존에는 생산직근로자의 연장근로수당의 비과세 기준이, 월정액급여 210만원 이하 & 직전 과세기간 총급여액 3,000만원 이하였음.
- 개정안에 따르면 생산직근로자의 연장근로수당의 비과세 기준이 월정액급여 260만원 이하 & 직전 과세기간 총급여액 3,700만원 이하로 변경됨. 이를 만족하는 경우 비과세한도는 기존과 동일하게 연간 240만원임.
- 개정 전에는 자녀 수 상관없이 월 20만원까지 자녀보육수당에 대해 비과세하였으나 세법 개정으로 자녀 1인당 20만원까지 비과세한다.

월정급여액	월정액급여 계산시 자녀보육수당과 식사대는 실비변상적 또는 복리후생적인 성질의 비과세급여가 아니므로 비과세 여부와 관계 없이 전액 포함하고, 출퇴근용으로 사용한 차량보조금과 근로자 부담분을 사용자가 대신 부담한 국민연금은 과세근로소득이므로 포함한다. → 1,500,000(기본급) + 600,000(자녀보육수당) + 200,000(식사대) + 200,000(차량보조금) + 60,000(근로자 부담금을 회사가 대신 부담한 국민연금) = 2,560,000
-------	---

4. 다음은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 갑(남성)의 2026년 귀속 종합 소득과 세표준 및 세액의 신고와 관련한 자료이다. 이 자료를 이용하여 거주자 갑의 2026년 특별세액공제 중 교육비세액공제액을 계산하면 얼마인가? 단, 교육비세액공제액은 전액 근로 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 가능한 것으로 가정한다.

[SUMMIT 2회 28번]

- (1) 갑이 근무 중인 회사로부터 2026년에 수령한 소득에는 회사규정에 의한 본인 대학원 학자금 3,000,000원과 차남 학자금 1,000,000원이 포함되어 있다.

- (2) 생계를 같이하는 동거가족 현황

구분	연령	비고
장남	25세	장애인, 대학원생, 소득없음.
차남	22세	대학생, 2026년 종합소득금액 5,000,000원
장녀	18세	고등학생, 소득 없음
차녀	8세	취학전 아동, 소득 없음
모친	70세	소득 없음

- (3) 교육비 지출액(특별히 언급된 것 외에는 갑이 지출한 교육비임)

- 가. 본인: 직업능력개발훈련 수강료 1,000,000원(「고용보험법」에 의하여 근로자 수강지원금 600,000원을 받았음), 대학원 정규교육과정 교육비 9,000,000원
- 나. 장남: 대학원 교육비 3,500,000원 및 장애인특수교육비 1,800,000원
- 다. 차남: 대학교 수업료 10,000,000원(학교로부터 장학금 9,000,000원 수령)
- 라. 장녀: 고등학교 수업료 2,500,000원(학교급식비 200,000원, 학교에서 구입한 도서구입비 380,000원 포함), 수학여행비 450,000원, 교복구입비 600,000원, 수능응시료 35,000원 및 입시학원 수강료 1,500,000원
- 마. 차녀: 음악학원 수강료 2,200,000원 및 태권도 도장비 600,000원(관련 법률에 의한 예능학원 및 체육시설로서 1주 1회 이상 교습)
- 바. 모친: 야간 고등학교 수업료 1,500,000원

① 2,150,000원      ② 2,250,000원      ③ 2,450,000원

④ 2,550,000원      ⑤ 2,650,000원

## 세법

**정답** ②

**해설**

### (1) 공제대상자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그 거주자와 기본공제대상자(소득요건 O, 나이요건 X)가 대상이며 배우자, 직계비속, 형제자매, 입양자 및 위탁아동이 대상이므로 직계존속은 해당되지 않는다. 따라서 본인, 장남, 차남, 장녀, 차녀가 공제대상자이다.

### (2) 공제대상 교육비

구분	금액	비고
본인	6,400,000	본인의 교육비는 한도 없이 모두 공제 대상이다. 다만, 직업능력개발훈련 수강료는 공제대상이지만, 「고용보험법」에 의하여 근로자 수강지원금은 차감한다. 또한 대학원 교육비도 공제대상이지만, 회사에서 수령한 비과세 학자금은 차감한다. → $(1,000,000 - 600,000) + (9,000,000 - 3,000,000) = 6,400,000$
장남	1,800,000	본인을 제외한 부양가족의 대학원 교육비는 공제대상에서 제외한다. 장애인 특수교육비는 한도 없이 전액 공제된다.
차남	1,000,000	〈2026 개정세법〉 개정으로 일반 교육비세액공제 적용 시 소득요건을 민족하지 않아도 된다. 즉, 교육비 세액공제 판단 시 나이요건과 소득요건 모두 고려하지 않는다. 따라서 차남의 2026년 종합소득금액 5,000,000원과 상관없이 일반 교육비세액공제 대상이 된다. 회사에서 수령한 차남의 학자금은 근로소득 과세대상이므로 교육비 공제 대상이 된다. 다만, 학교로부터 수령한 장학금은 비과세대상이므로 교육비에서 차감한다. → $10,000,000 - 9,000,000 = 1,000,000$
장녀	3,000,000	학교급식비와 학교에서 구입한 도서구입비를 포함한 고등학교 수입료는 모두 공제대상이고, 수학여행비(연간 30만원 한도)와 교복구입비(연간 50만원 한도)와 수능응시료도 공제대상이다. 다만, 사설학원 수강료는 공제 대상에서 제외한다. 다만, 고등학생 1인당 300만원까지가 공제한도이다. → Min [300만원, 2,500,000 + 300,000 + 500,000 + 35,000] = 3,335,000 = 300만원

구분	금액	비고
차녀	2,800,000	〈2026 개정세법〉 과거 취학 전 아동의 유치원, 어린이집 수업료, 학원비, 체육시설 교육비 등만이 공제대상이었으나, 개정으로 2026년부터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9세 미만 또는 2학년 이하 초등학생의 예능학원 및 체육시설 교육비는 공제 대상이다. 주 1회 이상 실시하는 과정에만 해당되므로 주어진 학원비는 공제대상이다. 취학 전 아동 1인당 300만원까지 공제된다. → Min [300만원, 2,200,000 + 600,000] = 2,800,000
공제대상 교육비	15,000,000	

### ▣ 2026 개정세법

- 개정으로 일반 교육비세액공제 적용 시 소득요건을 민족하지 않아도 된다. 즉, 교육비 세액공제 판단 시 나이요건과 소득요건 모두 고려하지 않는다. 따라서 차남의 2026년 종합소득금액 5,000,000원과 상관없이 일반 교육비세액공제 대상이 된다.
- 개정으로 2026년부터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9세 미만 또는 2학년 이하 초등학생의 예능학원 및 체육시설 교육비는 공제 대상이다.

5. 제조업을 영위하는 영리내국법인 (주)A(중소기업 아님)의 제26 기(2026.1.1.~2026.12.31.) 기업업무추진비 세무조정을 위한 자료이다. 기업업무추진비 한도초과액 금액으로 높은 것은?  
[2023 CPA 1차 8번 변형]

- (1) 포괄손익계산서상 매출액은 15,000,000,000원이고, 이 금액에는 매출할인 3,000,000,000원이 차감되어 있다.
- (2) 포괄손익계산서상 기업업무추진비로 비용처리한 금액은 70,000,000원이고, 문화기업업무추진비와 경조금 해당액은 없다.
- (3) 제26기 기업업무추진비 내역은 다음과 같다.

구 분	전당 3만원 이하분	전당 3만원 초과분
적격증명서류 수취분	15,000,000원	53,000,000원 <sup>1</sup>
영수증 수취분	1,500,000원	500,000원

- \*1 전통시장에서 신용카드로 결제한 접대 목적 지출액 1,000,000원과 거래처에 접대목적으로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출한 금액 2,000,000원이 포함되어 있다.
- (4) 포괄손익계산서상 복리후생비 중 적격증명서류를 수취한 기업업무추진비 해당 금액은 5,000,000원이고, 이 금액에는 대표이사가 업무와 무관하게 사적인 용도로 사용한 금액 1,000,000원이 포함되어 있다.
  - (5) 수입금액에 관한 적용률

100억원 이하	3/1,000
100억원 초과 500억원 이하	3천만원+(수입금액-100억원) ×2/1,000

- ① 18,500,000원    ② 20,000,000원    ③ 21,500,000원  
④ 23,000,000원    ⑤ 24,500,000원

## 세법

정답 ①

해설

### (1) 기업업무추진비 해당액

구분	금액	세무조정
순익계산서 상 기업업무 추진비	70,000,000	-
적격증명서류 미수취액	(-)500,000 <sup>*1</sup>	〈손금불산입〉 기타사외유출
복리후생비 계상액	4,000,000 <sup>*2</sup>	-
계	73,500,000	

\*1 적격증명서류 미수취액

한차례의 접대에 지출한 기업업무추진비가 30,000원을 초과하므로 적격증명서류를 수령해야 하나, 영수증을 수취하였으므로 〈손금불산입〉기타사외유출한다.

### (2) 기업업무추진비 한도초과액

세법상 한도액	일반수입금액 = 15,000,000,000  ① 기본 한도 = $12,000,000 \times 12/12 = 12,000,000$ ② 일반수입금액 한도: 40,000,000 1) $10,000,000,000 \times 0.3\% = 30,000,000$ 2) $5,000,000,000 \times 0.2\% = 10,000,000$ ③ 전통시장 및 지역사랑상품권 기업업무추진비 추가 한도 = $\text{Min}[1,000,000 + 2,000,000, 52,000,000$ $\times 20\%]$ = 3,000,000 → 세법상 한도액(① + ② + ③) = $12,000,000 + 40,000,000 + 3,000,000$ = 55,000,000
기업업무 추진비 해당액	73,500,000
한도 초과액	18,500,000

### ▣ 2026 개정세법

2026 개정으로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출한 기업업무추진비가 추가 손금산입한도에 적용되도록 대상을 확대하고, 추가 손금산입한도를 기업업무추진비 한도액의 20%로 상향하였다.

6.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회적 기업 (주)A의 제26기(2026.1.1. ~ 12.31.) 자료이다. (주)A의 제26기 일반기부금 한도초과액은 얼마인가?

- (1) 제26기 손익계산서상 당기순이익은 50,000,000원이고, 기부금을 제외한 세무조정 내역은 다음과 같다.
- ㄱ. 법인세비용: 2,000,000원
  - ㄴ. 감가상각비 한도초과: 5,000,000원
  - ㄷ.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3,000,000원
- (2) 제26기 손익계산서에 계상된 기부금 내역은 다음과 같다.
- ㄱ. 국립대학병원 연구비: 1,000,000원(현금)
  - ㄴ. 정부의 인기를 받은 문화예술단체(주)A와 특수관계 없음에 기부한 (주)A의 제품: 장부가액 30,000,000원으로 계상되었으며, 시가는 50,000,000원임
  - ㄷ. 대표이사 종친회 기부금: 1,000,000원(현금)
  - ㄹ. 설립절차가 진행중인 학교법인에 대한 시설비기부금: 2,000,000원(설립인가일은 2027.4.10.임)
- (3) 제26기 말 현재 법인세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공제할 수 있는 이월결손금과 이월된 특례기부금 및 일반기부금의 한도초과액은 없다.

① 3,900,000원    ② 4,300,000원    ③ 22,100,000원

④ 27,100,000원    ⑤ 27,200,000원

## 세법

**정답** ①

**해설**

### (1) 기부금의 구분

구분	특례기부금	일반기부금	비지정기부금
① 국립대학병원 연구비	1,000,000		
② 문화예술단체 기부금* <sup>1</sup>		30,000,000	
③ 대표이사 종친회 기부금* <sup>2</sup>			1,000,000
④ 학교법인 시설비 기부금* <sup>3</sup>	-	-	-
계	1,000,000	30,000,000	1,000,000

\*1 일반 기부금 단체에 기부한 현물 기부금은 특수관계자 외의 경우 장부가액을 기부금으로 본다.

\*2 대표이사 종친회 기부금은 비지정기부금으로 손금불산입한다.  
〈손금불산입〉 비지정기부금 1,000,000 (기타사외유출)

\*3 설립 중인 공익법인 등에 지출한 기부금의 귀속시기는 해당 법인 및 단체가 정부로부터 인가 또는 허가를 받는 날(2027.4.10.)이 속하는 사업연도(제 27기)로 한다. 따라서 해당 기부금은 선급기부금으로 다음과 같이 세무조정한다.

〈손금불산입〉 선급기부금 2,000,000 (유보)

### (2) 차가감소득금액

당기순이익	50,000,000
법인세비용	(+) 2,000,000
감가상각비 한도초과	(+) 5,000,000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 3,000,000
비지정기부금	(+) 1,000,000
선급기부금	(+) 2,000,000
차가감소득금액	57,000,000

### (3) 기준소득

기준소득금액	57,000,000(차가감소득금액) + 1,000,000(특례기부금) + 30,000,000(일반기부금) = 88,000,000
기준소득	기준소득금액 88,000,000 - 0 = 88,000,000

### (4) 기부금 한도시부인

특례 기부금	① 세법상 한도 = $88,000,000 \times 50\% = 44,000,000$ ② 결산상 계상액 = 1,000,000 ③ 한도미달액 = $\Delta 43,000,000$ → 세무조정 없음
일반 기부금	<p>〈2026 개정세법〉 사회적 기업의 손금산입 한도율이 20%에서 30%로 변경됨. 사회적기업의 기부 활성화 지원이 목적이.          ① 세법상 한도 = <math>(88,000,000 - 1,000,000) \times 30\% = 26,100,000</math>          ② 결산상 계상액 = 30,000,000          ③ 한도초과액 = 3,900,000          〈손금불산입〉 3,900,000 (기타사외유출)       </p>